

투자위험등급 3등급(다소높은위험)						하이자산운용(주) 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이 DNDN 에버그린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 DNDN 에버그린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이 DNDN 에버그린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이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i-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22년 06월 1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2년 06월 28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투자신탁은 2022년 02월 10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707-4200, www.hi-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02-2003-9000, www.kofia.or.kr), 각 판매회사 본·지점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하이 톡톡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을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한 후 모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므로 신중한 검토 후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위험이 집합투자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특성(국내외 재간접 구조-피투자펀드 등) 및 그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 약 정 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2.06.10)

하이 DNDN 에버그린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DQ981]

투자위험등급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하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재간접투자위험, 국가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하이 DNDN 에버그린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p>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재간접형)입니다.</p> <p style="color: red;">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p> <p>2. 투자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에 분산 투자하고 주기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투자비중을 조절하여 운용함으로써 다양한 경제 상황에서 변동성이 적고 지속적인 성과를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하이자산운용이 관리하는 체계적인 펀드 운용시스템과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이루다투자자일임의 자문을 받아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이 함께 적용된 핀테크(Fin-tech) 상품입니다. - ETF 괴리율, 거래량 등 ETF 유동성 모니터링을 통한 정량적 분석과 ETF 상위 개별 종목의 리서치를 통한 정성적 분석을 기반으로 각 자산군 내 ETF를 선정,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며, ETF 유니버스의 유동성, 보수, 괴리율 및 개별종목을 심층 분석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 - 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0%이내	1.21	0.70	1.01	1.560	258	420	588	940	1,932
	수수료미징구 - 오프라인(C)	없음	1.460	0.95	1.35	1.810	186	377	574	988	2,141
	수수료선취 - 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0%이내	0.860	0.35	0.63	1.210	173	301	433	713	1,509
수수료미징구	없음	0.985	0.475	0.88	1.335	137	279	426	736	1,615	

	<p>온라인(Ce)</p> <p>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되, 기타 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최근 총보수 가중평균인 연 0.35%를 예상치로 포함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6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작성기준 : 2021.11.30)</p>																																								
<p>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클래스 종류</th> <th rowspan="2">최초 설정일</th> <th>최근 1년</th> <th>최근 2년</th> <th>최근 3년</th> <th>최근 5년</th> <th rowspan="2">설정일 이후</th> </tr> <tr>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비교지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수익률 변동성(%)</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주1)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p> <p>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p> <p>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p>	클래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	-	-	-	-	비교지수(%)	-	-	-	-	-	-	수익률 변동성(%)	-	-	-	-	-	-								
클래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	-	-	-	-																																			
비교지수(%)	-	-	-	-	-	-																																			
수익률 변동성(%)	-	-	-	-	-	-																																			
<p>운용전문인력</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성명</th> <th rowspan="3">생년 (년)</th> <th rowspan="3">직위</th> <th colspan="2">운용현황</th> <th colspan="4">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 (해외재간접형, 단위:%)</th> <th rowspan="3">운용 경력년수</th> </tr> <tr> <th rowspan="2">집합투자 기구수</th> <th rowspan="2">운용 규모</th> <th colspan="2">운용역</th> <th colspan="2">운용사</th> </tr> <tr> <th>최근1년</th> <th>최근2년</th> <th>최근1년</th> <th>최근2년</th> </tr> </thead> <tbody> <tr> <td>강성호</td> <td>1972</td> <td>책임 (이사대우)</td> <td>24개</td> <td>4464억원</td> <td>-1.62</td> <td>5.74</td> <td>9.62</td> <td>17.56</td> <td>18년1개월</td> </tr> <tr> <td>배현주</td> <td>1976</td> <td>부책임 (수석)</td> <td>24개</td> <td>4464억원</td> <td>-</td> <td>-</td> <td>9.62</td> <td>17.56</td> <td>19년2개월</td> </tr> </tbody> </table> <p>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솔루션팀에서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p> <p>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p>	성명	생년 (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 (해외재간접형, 단위:%)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강성호	1972	책임 (이사대우)	24개	4464억원	-1.62	5.74	9.62	17.56	18년1개월	배현주	1976	부책임 (수석)	24개	4464억원	-	-	9.62	17.56	19년2개월
성명	생년 (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 (해외재간접형, 단위:%)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강성호	1972	책임 (이사대우)	24개	4464억원	-1.62	5.74	9.62	17.56	18년1개월																																
배현주	1976	부책임 (수석)	24개	4464억원	-	-	9.62	17.56	19년2개월																																
<p>투자자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p>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p>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p>
	재간접 투자위험	<p>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인 피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외국투자신탁의 경우,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p>
	환율변동위험	<p>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해외증권시장의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외화표시자산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의 환율변동 위험회피를 위한 환헤지전략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투자 대상의 가격상승으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환율변동에 의한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할 경우,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한 투자대상의 가격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환율변동에 의해 그 손실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환율변동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경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집합 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환헤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p>
	집합투자증권 (ETF) 유동성위험	<p>이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특성(국내외 재간접 구조-피투자펀드 등) 및 그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집합투자증권 (ETF) 상장폐지 위험	<p>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집합투자증권(ETF)의 매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ETF)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증권(ETF)의 설정 또는 해지도 중지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상장 거래종목에 대해서 상장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장유지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집합투자증권(ETF)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장이 폐지될 수도 있고 이 경우 투자 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집합투자증권 (ETF) 투자에 따른 추적 오차발생 위험	<p>이 투자신탁에서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ETF)은 그 추종지수와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성과도 집합투자증권(ETF)에서 발생하는 추적오차로 인하여 추종지수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국가위험	<p>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함에 따라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당해 국가의 급격한 정치, 경제적 변화로 인해 투자신탁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p>
	외국세법에 의 한 과세에 따 른 위험	<p>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p>
	투자신탁 해지 위험	<p>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없이 "하이독독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이 모자형 펀드로 전환한 후 해당 모펀드의 자펀드로 전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매입 방법	<p>·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p>	<p style="text-align: center;">환매 방법</p> <p>·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영업일(D+3)에</p>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 ·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9영업일(D+8)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지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지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i-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수익자	<p>집합투자지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p>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지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세제혜택 및 과세에 대한 세부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지구에 관한 사항 중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하이자산운용(주) 대표번호 : 02-707-42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hi-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2년 06월 28일	종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i-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지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지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지구는 종류형 집합투자지구입니다. 집합투자지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지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지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취 (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년 5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지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6개월	
		수수료후취	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지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년 5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지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6개월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지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지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지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지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퇴직연금 (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F)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및 일정금액 이상 납입한 투자자 등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 계좌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 보험업법 상의 특별계정 전용 수익증권에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i-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홈페이지(www.hi-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i-asset.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하이 DNDN 에버그린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DQ98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DQ982
수수료선취-온라인(Ae)	DQ98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DQ98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DQ98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DQ98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DQ98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DQ99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DQ9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DQ99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2e)	DQ994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DQ99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연금))	DQ99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DQ99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 해당 없음
-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최초설정일 기준 1좌당 1원) 단위로 모집합니다.

- 주1) 모집(판매) 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 주2) 모집(판매) 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 되거나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 또는 예정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이 투자신탁은 2022년 02월 10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추가형으로 모집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i-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하이 DNDN 에버그린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DQ98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DQ982
수수료선취-온라인(Ae)	DQ98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DQ98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DQ98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DQ98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DQ98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DQ99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DQ9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DQ99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2e)	DQ994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DQ99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연금))	DQ99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DQ99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2년 02월 10일	효력발생일
2022년 02월 12일	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류 C-Pe 수익증권 판매보수율 오기정정(연 1000분의 0.38→연 1000분의 3.80)
2022년 06월 28일	펀드 명칭 변경(하이 Wello 에버그린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하이 DNDN 에버그린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 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하이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14층

	02-707-4200, www.hi-asset.com
--	-------------------------------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문회사로부터의 투자자문

①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투자신탁의 효율적 투자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하여 투자자문회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회사 선정과 관련하여 투자자문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

② 투자자문회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운용을 위한 투자대상 종목군의 추천 등 투자자문서비스
- 운용과 관련된 부수적인 자료
- 운용과 관련된 종목추천, 시황, 경제전망 등에 관한 조언

③이 투자신탁은 현재(2021년 12월) "이루다투자일임(주)"의 자문을 받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운용 중에 투자자문업자와의 자문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투자자문업자로 자문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내용은 변경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회 사 명	이루다투자일임(주)
설립일	2016.05.24
자본금	29억원(2021.09.30기준)
사업개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의 서비스 제공하도록 승인을 받은 회사로서 빅데이터 분석, 최적의 자산군 선정, 상관관계분석, 포지션 선정, 성과 분석, 리스크관리의 투자프로세스를 통해 고객에게 투자 솔루션을 제공
홈페이지	https://www.iruda.io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기준: 2022.06.10 현재)

구분	성명	생년(년)	직위	운용경력년수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책임 운용 전문 인력	강성호	1972	이사대우	18년 1개월	하이자산운용 글로벌솔루션팀(19.12.~현재) 제이앤투자자문 전략총괄(17.06.~19.12) KB자산운용 해외채권팀(11.12.~16.09) 국민연금공단 해외증권실(09.10.~11.12) 삼성자산운용 해외증권팀(05.05.~09.10) 맥쿼리자산운용 전략운용본부(03.05~05.03)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부책임 운용전 문인력	배현주	1976	수석	19년 2개월	하이자산운용 글로벌솔루션팀(22.01.~현재) 브이아이자산운용 Global Investment Solution 팀(10.12.~22.01) 삼성자산운용 해외투자팀(00.06.~08.02)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성명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 재간접형) (%)
----	------	-------------------------------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강성호	24개	4,464억원	-1.62	5.74	9.62	17.56
배현주	24개	4,464억원	-	-	9.62	17.56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솔루션팀에서 담당합니다. 상기인은 "책임운용전문인력"으로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한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투자신탁의 명칭, 투자신탁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 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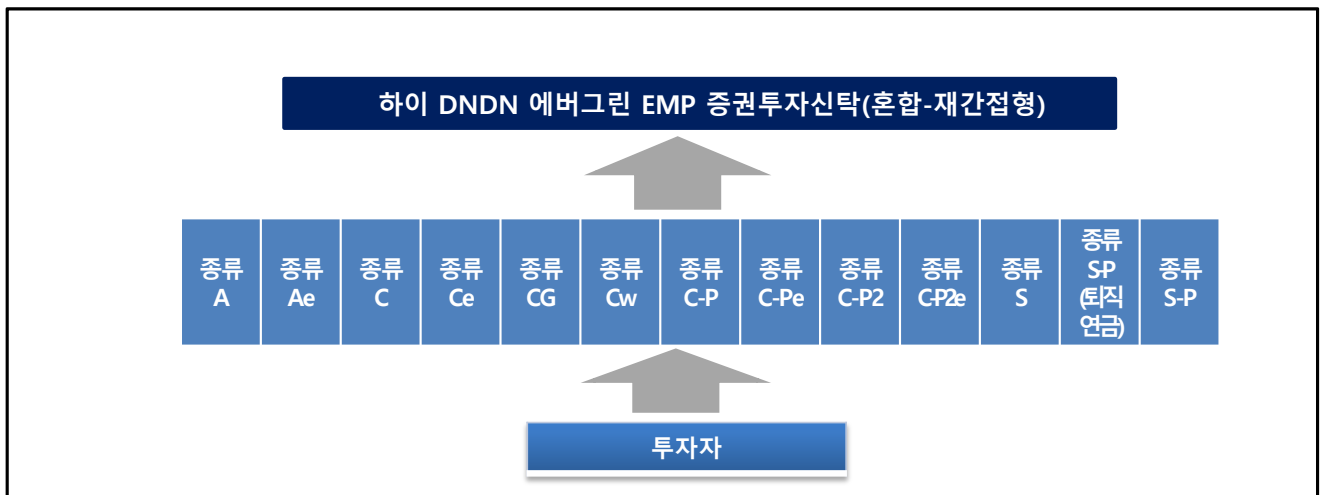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 기간
-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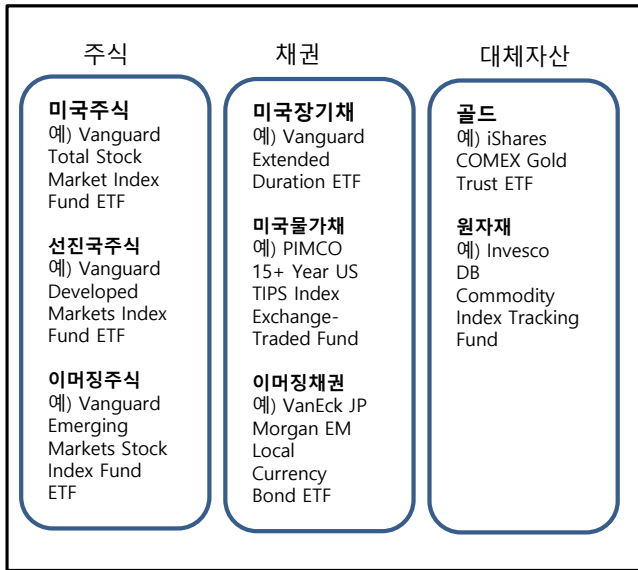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5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

		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5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6개월
판매경로	온라인(C)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퇴직연금(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및 일정금액 이상 납입한 투자자 등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 계좌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 보험업법 상의 특별계정 전용 수익증권에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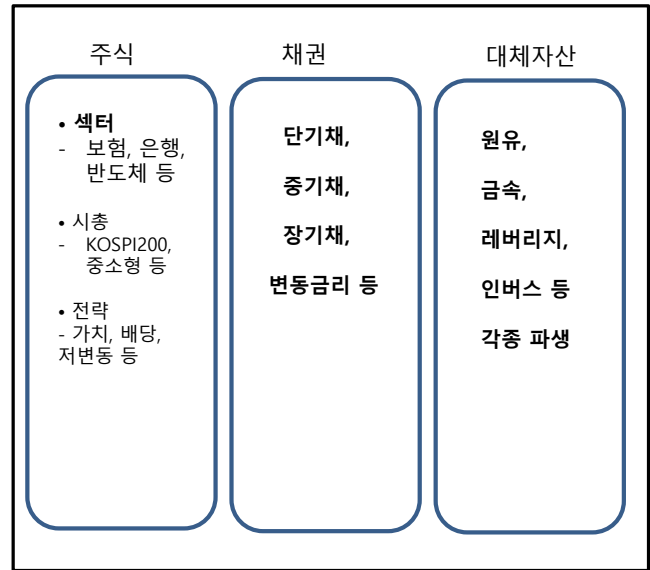
다. 재간접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미국 ETF 시장(NYSE)



한국 ETF 시장(KRX)



하이 DNDN 에버그린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 필요성 및 선정기준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피투자집합투자기구로 국내·외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국내 및 해외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에 투자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분산투자 효과를 위해 자산군, 지역, 스타일 등을 대표하는 각 자산의 가격흐름을 추종하는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중에 유동성, 시가총액, 수수료 등 정량적 요인과 운용의 안정성, 투명성 등 정성적 요인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이므로 정성적인 요인의 분석은 공시된 투자설명서, 운용보고서 등을 참고하고 정량적인 요인을 분석은 블룸버그 등 금융정보제공 인프라를 통해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 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	집합투자증권	60%이상 다만, 주식 및 채권 관련 집합 투자증권에 의 투자는 60% 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 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②	주식	40%미만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 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③	채권	40%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④	어음	40%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⑤	자산유동화증권	40%미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⑥	파생상품	10%이하 (위험평가 액 기준)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다만, 통화관련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만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⑦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50% 이하
⑧	증권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⑨	증권차입		①부터 ⑤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p>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2.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투자대상 ① 내지 ⑤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부터 ⑤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 투자대상 ⑥ 내지 ⑨ 및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p>집합투자업자는 상기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p>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투자제한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p>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 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 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p> <p>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 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p>③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p>④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p>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부터 1개월간
	⑤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 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⑦ 집합투자증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 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⑧ 계열회사 발행 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동일법인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금전의 차입 등의 제한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p>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규약 제24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집합투자규약 제36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제2항으로 정하는 때 <p>- 상기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p> <p>- 상기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p> <p>-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자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합니다.</p> <p>-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p>	
<p>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p>	<p>-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수익증권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 2. 집합투자규약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p>-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 투자신탁자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의 투자제한 ②부터 ⑦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자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p>- 집합투자규약 제2조제4호, 제17조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및 나목,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 및 법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p>-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3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p>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합니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습니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합니다)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영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집합투자계약 제17조제3호 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자산 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재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투자방침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에 투자할 것
 - 2.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투자전략을 활용할 것
 - 3. 집합투자업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출 것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및 투자 필요성, 실사(Due Diligence), 선정 프로세스 등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설립국가, 설립국가의 감독기관, 투자비중, 회계감사 실시 여부, 홈페이지 주소 등 정보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국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의거하여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상세사용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관련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신 후에 투자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절차에 따라 이미 등록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관련 정보를 미국 증권거래위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www.sec.gov/edgar/searchedgar/companysearch.html>)과 ETF.com (<https://etf.com>)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투자 개요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에 분산 투자하고 주기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투자비중을 조절하여 운용함으로써 다양한 경제 상황에서 변동성이 적고 지속적인 성과를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하이자산운용이 관리하는 체계적인 펀드 운용시스템과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이루다 투자일임의 자문을 받아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이 함께 적용된 핀테크(Fin-tech) 상품입니다.

(2) 하이 Wello 에버그린 EMP 자산배분 전략

- 레이 달리오, "All Weather Portfolio"를 이루다투자일임의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통해 계량적 방법론으로 재구성합니다.
- 경제 상황을 성장, 불황,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4개의 국면으로 구분하며, 국면에 대한 예측을 지양하고 4가지 경기국면에 리스크를 25%씩 동일하게 배분하는 리스크 패리티 자산배분 전략을 활용하여 자산의 최종 투자비중을 산출합니다.
- 경기 국면별 로보어드바이저에서 제시한 포트폴리오의 최종결정은 하이자산운용의 리스크관리 시스템 및 유동성 관리 검토 후 최종 결정됩니다.
- ETF 괴리율, 거래량 등 ETF 유동성 모니터링을 통한 정량적 분석과 ETF 상위 개별 종목의 리서치를 통한 정성적 분석을 기반으로 각 자산군 내 ETF를 선정,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며, ETF 유니버스의 유동성, 보수, 괴리율 및 개별종목을 심층 분석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 투자 유니버스 선정 기준

(1) 이루다투자일임의 유니버스 선정



(2) 하이자산운용의 ETF 관리 (정량 스코어링을 통한 더블체크)

- 편입 대상 ETF의 시가총액, 괴리율, 거래량, 보수율 등의 정량 데이터를 분석
- 순위 스코어링을 통해 선호 / 배제 방법으로 ETF 도출

ETF	주요지역	편입종목 수	시총	과리율 (절대값)	거래량 (절대값)	거래량 (좌수대비)	보수율
Real Estate Select Sector SPDR Fund	U.S.	32	4,543.9	0.02%	302.6	6.66%	0.13%
iShares U.S. Real Estate ETF	U.S.	114	2,902.2	0.03%	702.1	24.19%	0.42%
JPMorgan BetaBuilders MSCI US REIT ETF	U.S.	152	937.6	0.11%	16.0	1.71%	0.11%
Vanguard Global ex-U.S. Real Estate ETF	Intematio	644	4,368.3	0.35%	41.7	0.95%	0.12%
Vanguard Real Estate ETF	U.S.	184	27,267.1	0.09%	620.0	2.27%	0.12%
Schwab U.S. REIT ETF	U.S.	95	4,609.4	0.10%	62.6	1.36%	0.07%
Xtrackers International Real Estate ETF	Intematio	582	223.3	0.13%	3.3	1.50%	0.10%

▣ 포트폴리오 선정 기준 절차

(1) 운용 프로세스



(2) 리스크 패리티 알고리즘

- 리스크 동일 배분의 로직을 자산별 / 국면별 이중 적용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비중을 역으로 산출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자산군	개별자산	종목	운용사	티커	운용규모	상장지역	투자비중 (예시)
주식	미국주식	Vanguard Total Stock Market Index Fund ETF	Vanguard Group	VTI US Equity	\$1.3 tr	미국	12%
	선진국주식 (ex US)	Vanguard Developed Markets Index Fund ETF	Vanguard Group	VEA US Equity	\$157 bn	미국	12%
	이머징주식	Vanguard Emerging Markets Stock Index Fund ETF	Vanguard Group	VWO US Equity	\$110 bn	미국	12%
채권	미국장기채	Vanguard Extended Duration ETF	Vanguard Group	EDV US Equity	\$3 bn	미국	16%
	미국장기회사채	Vanguard Long-Term Corporate Bond Idx Fund ETF	Vanguard Group	VCLT US Equity	\$6 bn	미국	5%
	미국물가채	PIMCO 15+ Year US TIPS Index Exchange-Traded Fund	Pacific Investment Management	LTPZ US Equity	\$1 bn	미국	20%

			Company				
	이머징채권	VanEck JP Morgan EM Local Currency Bond ETF	Van Eck Associates Corporation	EMLC US Equity	\$0.35 bn	미국	7%
대체 자산	골드	iShares COMEX Gold Trust ETF	iShares Delaware Trust Sponsor (BlackRock)	IAU US Equity	\$27 bn	미국	8%
	원자재	Invesco DB Commodity Index Tracking Fund	Invesco powershares capital management	DBC US Equity	\$ 3 bn	미국	8%

주)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2021년 12월 31일 작성기준 시점으로 작성된 예시이며, 실제 운용시 운용상황,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ETF명	VANGUARD TOTAL STOCK MKT ETF
Benchmark	CRSP US Total Market TR Index
주요 투자전략 및 정보	전체 미국 증시를 추종하는 것이 투자전략이며 3500개 이상의 소형, 중형, 대형 미국 주식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Ticker	VTI US Equity
ISIN	US9229087690
Net Asset Value	2,942.92억달러
상장일	2001-05-31
주거래소	NYSE Arca
등록국	US
유형	Equity
감독/등록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TF명	VANGUARD FTSE DEVELOPED ETF
Benchmark	FTSE Developed ex US All Cap Net Tax (US RIC) Index
주요 투자전략 및 정보	글로벌 중대형 주식들에 투자하는 전략이며 서유럽 및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Ticker	VEA US Equity
ISIN	US9219438580
Net Asset Value	1,099.05억달러
상장일	2007-07-26
주거래소	NYSE Arca
등록국	US
유형	Equity
감독/등록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TF명	VANGUARD FTSE EMERGING MARKET
Benchmark	FTSE Emerging Markets All Cap China A Inclusion Net Tax (US RIC) Index
주요 투자전략 및 정보	신흥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대만 및 중국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Ticker	VWO US Equity
ISIN	US9220428588
Net Asset Value	802.49억달러
상장일	2005-03-10
주거래소	NYSE Arca
등록국	US
유형	Equity
감독/등록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TF명	VANGUARD EXTENDED DUR TREAS
Benchmark	Bloomberg 20-30 Year Treasury Strips TR Index Unhedged US
주요 투자전략 및 정보	미국 장기물 국채(제로 쿠폰)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Ticker	EDV US Equity
ISIN	US9219107094
Net Asset Value	12.67억달러
상장일	2007-12-10
주거래소	NYSE Arca
등록국	US
유형	Fixed Income
감독/등록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TF명	VANGUARD LONG-TERM CORP BOND
Benchmark	Bloomberg US Corporate 10+ years Total Return Index Unhedged
주요 투자전략 및 정보	미국 장기물 회사채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Ticker	VCLT US Equity
ISIN	US92206C8139
Net Asset Value	52.99억달러
상장일	2009-11-23
주거래소	NASDAQ GM
등록국	US
유형	Fixed Income
감독/등록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TF명	PIMCO 15+ YR US TIPS INDEX
Benchmark	ICE BofA 15+ Year US Inflation-Linked Treasury Index
주요 투자전략 및 정보	미국 장기물(15년 이상) 물가연동 국채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Ticker	LTPZ US Equity
ISIN	US72201R3049
Net Asset Value	9.52억달러
상장일	2009-09-04
주거래소	NYSE Arca
등록국	US
유형	Fixed Income
감독/등록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TF명	VANECK JPM EM LOCAL CURR BND
Benchmark	J.P. Morgan Government Bond Index Emerging Markets Global Core
주요 투자전략 및 정보	신흥 시장 국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Ticker	EMLC US Equity
ISIN	US92189H3003
Net Asset Value	33.37억달러
상장일	2010-07-23
주거래소	NYSE Arca
등록국	US
유형	Fixed Income
감독/등록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TF명	ISHARES GOLD TRUST
Benchmark	LBMA Gold Price PM USD
주요 투자전략 및 정보	금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Ticker	IAU US Equity
ISIN	US4642852044
Net Asset Value	288.89억달러
상장일	2005-01-28
주거래소	NYSE Arca
등록국	US
유형	Commodity
감독/등록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TF명	INVESCO DB COMMODITY INDEX T
Benchmark	Deutsche Bank DBIQ Optimum Yield Diversified Commodity Index Excess Return
주요 투자전략 및 정보	14가지 종류의 코모디티에(선물) 분산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또한 펀드는 매년 11월에 펀드 리밸런싱 및 종목 재구성을 진행합니다.
Ticker	DBC US Equity
ISIN	US46138B1035

Net Asset Value	27.76억달러
상장일	2006-02-03
주거래소	NYSE Arca
등록국	US
유형	Commodity
감독/등록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 투자전략, 운용사 및 이외의 관련 정보는 각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나 국내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미국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https://www.sec.gov/searchedgar/companysearch.html>)과 ETF.com (<https://etf.com>)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2021년 12월 31일 작성기준 시점으로 작성된 예시이며, 실제 운용시 운용상황,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국가의 현황]

▶ 미국

인구 : 330,271,681명 / 면적 : 9,372,610km² (자료원 : 미 인구조사국)

경제지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경제성장률(%)	1.71	2.33	3.00	2.16	-3.51
명목GDP(십억\$)	18,745.10	19,542.98	20,611.88	21,433.23	20,932.75
1인당 명목 GDP(\$)	58,017.23	60,105.85	63,055.98	65,253.52	63,415.99
물가상승률(%)	1.24	2.14	2.24	1.81	1.25
실업률(%)	4.88	4.35	3.89	3.68	8.10

▶ 한국

인구 : 51,821,669명 / 면적 : 100,413km² (자료원 : 통계청)

경제지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경제성장률(%)	2.9	3.2	2.9	2.2	-0.9
명목GDP(십억\$)	1,500.11	1,623.90	1,724.85	1,646.74	1,630.53
1인당 명목 GDP(\$)	29,330.00	30,300.00	32,730.00	33,790.00	32,860.00
물가상승률(%)	0.97	1.94	1.48	0.38	0.54
실업률(%)	3.7	3.7	3.8	3.8	4

▶ 중국

인구 : 1,400,050,000명 / 면적 : 9,596,961km²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경제지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경제성장률(%)	6.87	6.95	6.73	5.82	2.27
명목GDP(십억\$)	11,227.08	12,265.32	13,841.90	14,340.60	14,722.84
1인당 명목 GDP(\$)	8,119.62	8,823.46	9,919.81	10,242.92	10,483.88
물가상승률(%)	2.00	1.56	2.10	2.31	2.50
실업률(%)	4.02	3.90	3.80	3.80	4.24

▶ 인도

인구 : 1,391,197,718명 / 면적 : 3,287,260km² (자료원 : UN, CIA)

경제지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경제성장률(%)	8.3	6.8	6.5	4.00	-8.00
명목GDP(십억\$)	2,294.12	2,651.47	2,701.11	2,870.5	2,708.77
1인당 명목 GDP(\$)	1,732.05	1,980.69	1,996.95	2,098.93	1,964.88
물가상승률(%)	4.5	3.6	3.4	4.8	6.2
실업률(%)	6.29	4.68	6.97	7.58	9.27

▶ 브라질

인구 : 212,268,390명 / 면적 : 8,511,965km² (자료원 : 브라질 지리통계원)

경제지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경제성장률(%)	-3.27	1.32	1.79	1.22	-3.87
명목GDP(십억\$)	1,795.69	2,063.52	1,916.93	1,877.82	1,444.73
1인당 명목 GDP(\$)	8,710.00	9,929.00	9,151.00	8,898.00	6,797.00
물가상승률(%)	6.29	2.95	3.75	4.31	4.52
실업률(%)	11.87	12.00	11.63	11.27	14.10

▶ 영국

인구 : 66,796,807명 / 면적 : 243,610km² (자료원 : 영국통계청, The World Bank)

경제지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경제성장률(%)	1.81	1.82	1.40	1.24	-9.90
명목GDP(십억\$)	2,669.11	2,641.07	2,828.83	2,761.59	2,711.00
1인당 명목 GDP(\$)	40,657.86	39,976.78	42,579.82	41,030.23	40,406.00
물가상승률(%)	0.66	2.68	2.48	1.81	0.90
실업률(%)	4.88	4.43	4.08	3.81	4.50

▶ 프랑스

인구 : 67,063,703명 / 면적 : 657,417km² (자료원 : 프랑스 통계청)

경제지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경제성장률(%)	1.10	2.30	1.90	1.80	-7.90
명목GDP(십억\$)	2,471.29	2,588.74	2,789.59	2,728.87	2,630.32
1인당 명목 GDP(\$)	37,037.00	38,685.00	41,572.00	40,579.00	39,030.00
물가상승률(%)	0.60	1.20	1.60	1.30	0.00
실업률(%)	10.03	9.13	8.80	8.13	8.03

주) 투자대상국가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에 나열된 국가 외의 다른 국가에도 투자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시된 전략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특정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아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상기의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 등록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2) 위험 관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원본손실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투자전략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며,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부분 환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3) 환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나, 환율변동위험의 회피를 위하여 별도의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며 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급격한 환율변동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경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환헤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를 수행할 경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당사는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위험 단계별 비상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 ① 초기국면(1단계): 순자산 대비 환매비율 일간모니터링
- ② 진행국면(2단계): 순자산 대비 환매비율 일간모니터링. 일정 규모 이상의 대량환매발생시, 환매발생 원인파악 및 추가환매 추이 모니터링
- ③ 비상국면(3단계):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현금화 과정에서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현금화 과정에서 가격이 현저히 불리하여 잔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것이 예상되는 등, 환매연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부서에 통지. 내부 협의회 또는 위원회 개최하여 환매연기결정, 판매회사 협의, 대고객 안내, 수익자총회 등 의사결정. 관련부서는 협의회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응.

(5)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위험 및 관리방안

본 펀드는 글로벌(국내 포함)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 리츠(REITs) 및 인프라 펀드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본 펀드는 글로벌 경기 국면, 대상 국가의 정치 및 경제상황, 증권시장에 영향을 받으며, 투자 종목의 매각 불가, 거래량 부족, 상장폐지 등으로 인하여 대량환매에 대응하지 못한 위험 또는 자산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예상 편입대상 자산은 미국, 선진국, 신흥국에 분산투자되며, 주로 미국 등에 상장되어 있어 시장을 통한 현금화가 가능한 펀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 종목 및 투자 비중은 대상 종목의 거래량, 설정규모 등이 스코어카드를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결정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본 펀드가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경우 정기 운용보고서 및 수시공시 사항 등을 점검하여 유동성 위험 인지 시, 이에 대응할 계획이며, 규약에 따른 종목별 투자한도를 준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환매가 원활하지 못하여 환매 및 상환 연기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신속한 회수를 위해 노력합니다.

※ 상기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해외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주된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상품 가입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재간접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에 따라 투자대상인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규약 또는 정관 등을 따르며, 하위 집합투자기구를 직접 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자대상 하위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포트폴리오 세부 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을 대부분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해외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 상황, 외

	국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해외 채권 등의 거래에 있어서 운용회사, 발행국가,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국가,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위험	이 투자신탁은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장내시장에 비해 장외시장거래는 개별적인 계약이므로 장내시장에서 참여자들에게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호장치가 제공되지 않으며,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거래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외시장은 장내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적으므로 계약 청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매연기 등으로 인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함에 따라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당해 국가의 급격한 정치, 경제적 변화로 인해 투자신탁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시장거래에 따른 순자산가치와의 괴리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ETF)은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시장가격으로 유통시장을 통해 매매됩니다. 이 상장집합투자증권의 시장가격은 순자산가치(NAV) 및 유통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이 상장 집합투자증권의 시장가격이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순자산가치(NAV)보다 높게 또는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해외증권시장의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외화표시자산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의 환율변동 위험회피를 위한 환헤지전략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투자대상의 가격상승으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환율변동에 의한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할 경우,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한 투자대

	상의 가격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환율변동에 의해 그 손실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환율변동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경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환헷지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ETF) 상장폐지 위험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집합투자증권(ETF)의 매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ETF)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증권(ETF)의 설정 또는 해지도 중지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상장 거래종목에 대해서 상장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장유지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집합투자증권(ETF)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장이 폐지될 수도 있고 이 경우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ETF) 투자에 따른 추적 오차발생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ETF)은 그 추종지수와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성과도 집합투자증권(ETF)에서 발생하는 추적오차로 인하여 추종지수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ETF) 유동성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특성(국내외 재간접 구조-피투자펀드 등) 및 그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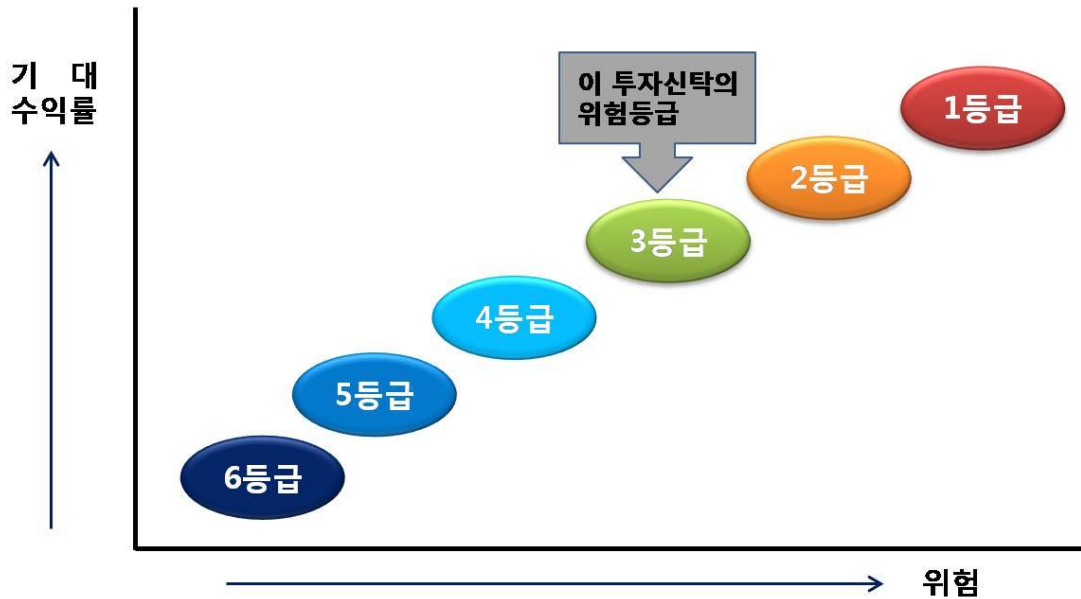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적어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 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의 해지 위험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p>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상기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p> <p>집합투자기구가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 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없이 "하이독톡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이 모자형 펀드로 전환한 후 해당 모펀드의 자펀드로 전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대량환매 위험</p>	<p>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운용 실무 위험</p>	<p>집합투자업자는 운용 실무 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 구조는 복잡한 결제 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 실무 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개장 및 폐장시각의 차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 과정에서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 운용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발생 가능성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p>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등급 중 3등급(다소 높은 위험)에 해당되는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재산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반면, 투자대상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투자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하이자산운용(주) 자체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하이자산운용주식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유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과 상기 위험등급분류 또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2)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BB+등급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가지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주3)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대출채권 및 이와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주4)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주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채권의 경우 해당국가의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주6) 모자형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및 편입비용 등을 기초로 분류하되 설정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7) 상기 분류에 따라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8)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 분류되며 상기의 위험분류 및 위험 등급 범위는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에 대한 절대적인 분류기준은 아닙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도 가능합니다.

(2) 가입자격

구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며 제한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며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3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억 이상 매입한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 계좌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 보험업법 상의 특별계정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2e)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서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연금))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에 가입하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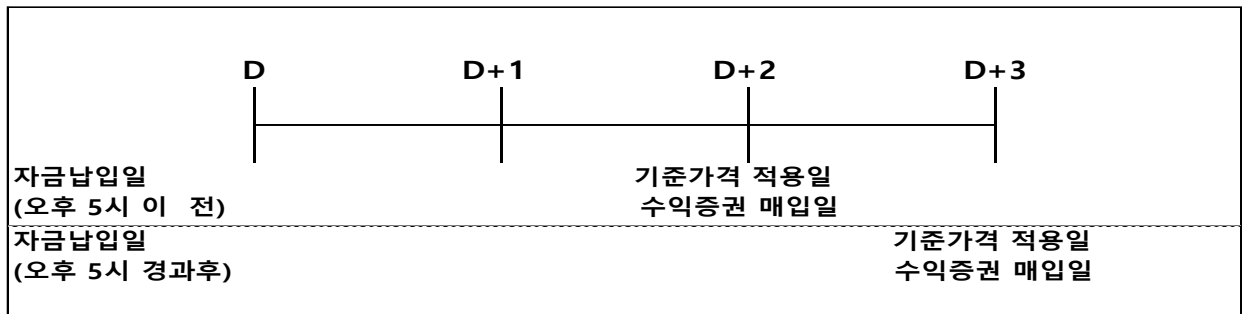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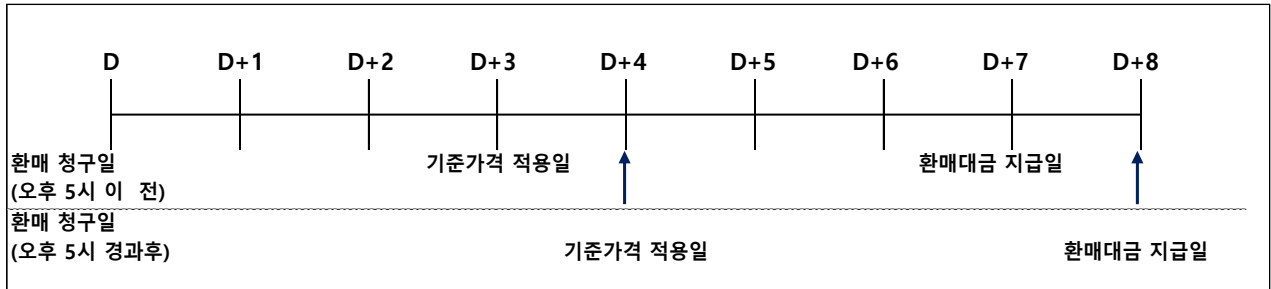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영업일(D+3)**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8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5영업일(D+4)**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환매수수료 :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 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

기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부분환매를 결정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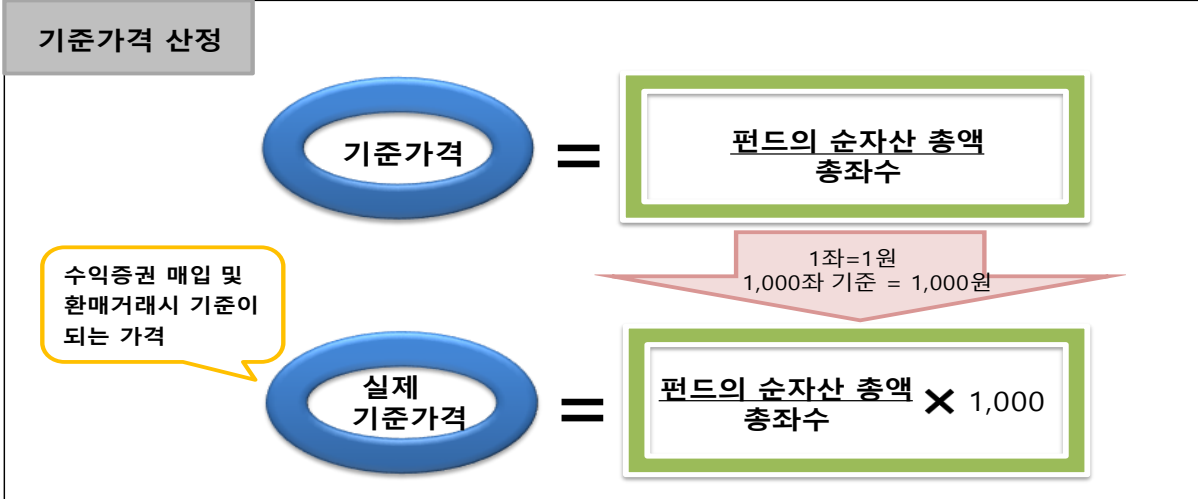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i-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시
------	-------------------------------------------------------------------------------------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재산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 (3)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집합투자재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

	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계산시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에 의함. 다만, 평가일의 발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의 발표가격에 의하여 평가
장외파생상품	당해 장외파생상품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주1)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위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나 세부기준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들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이내	-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이내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2e)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연금))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	-	-
부과시기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 비용	(동종 유형 총 보수)	총보수 · 비용 (피투자집 합투자기 구 보수포 함)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0.45	0.70	0.04	0.02	1.21	-	1.21	1.01	1.56	-
수수료선취- 온라인(Ae)	0.45	0.35	0.04	0.02	0.86	-	0.86	0.63	1.21	-
수수료미징 구-오프라인 (C)	0.45	0.95	0.04	0.02	1.46	-	1.46	1.35	1.81	
수수료미징 구-온라인 (Ce)	0.45	0.475	0.04	0.02	0.985	-	0.985	0.88	1.335	
수수료미징 구-오프라인 -기관(Cf)	0.45	0.03	0.04	0.02	0.54	-	0.54	-	0.89	
수수료미징 구-오프라인 -랩(Cw)	0.45	0.00	0.04	0.02	0.51	-	0.51	-	0.86	-
수수료미징 구-오프라인 -퇴직연금(C- P)	0.45	0.76	0.04	0.02	1.27	-	1.27	-	1.62	-
수수료미징 구-온라인- 퇴직연금(C- Pe)	0.45	0.38	0.04	0.02	0.89	-	0.89	-	1.24	-
수수료미징 구-오프라인 -개인연금(C- P2)	0.45	0.75	0.04	0.02	1.26	-	1.26	-	1.61	-
수수료미징 구-온라인-	0.45	0.37	0.04	0.02	0.88	-	0.88	-	1.23	-

개인연금(C-P2e)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45	0.32	0.04	0.02	0.83	-	0.83	-	1.18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연금))	0.45	0.25	0.04	0.02	0.76	-	0.76	-	1.11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0.45	0.26	0.04	0.02	0.77	-	0.77	-	1.12	-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 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에 있어서의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부과하는 보수(연간 0.35% 수준)를 포함하여 추정한 비율로서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수비용 수준을 나타냅니다. 다만,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하는 '기타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작성기준 2021.11.30)
- 주6)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6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 천원)

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223	349	480	757	1,54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58	420	588	940	1,932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38	229	323	524	1,104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73	301	433	713	1,50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50	305	465	803	1,756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86	377	574	988	2,141
수수료미징구-온라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01	206	315	547	1,212

인(Ce)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37	279	426	736	1,6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가관(Cf)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55	113	174	302	67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91	186	285	495	1,1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Cw)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52	107	164	286	64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88	180	275	479	1,0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C-P)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30	265	405	701	1,54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66	338	515	698	88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 직연금(C-P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91	186	285	495	1,100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27	259	396	685	1,5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C-P2)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29	263	402	695	1,530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65	336	512	882	1,92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 인연금(C-P2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90	184	282	490	1,08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26	257	393	679	1,49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85	174	266	462	1,029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21	246	377	652	1,43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 퍼-퇴직연금(S-P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78	159	244	424	94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14	232	355	615	1,35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 퍼-개인연금(S-P)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79	161	247	429	957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15	234	358	620	1,369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 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종류A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 종류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0.5%, 종류 AG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0.7%를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판매사별 판매수수료가 차등화되면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S 수익증권의 경우 보유기간을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

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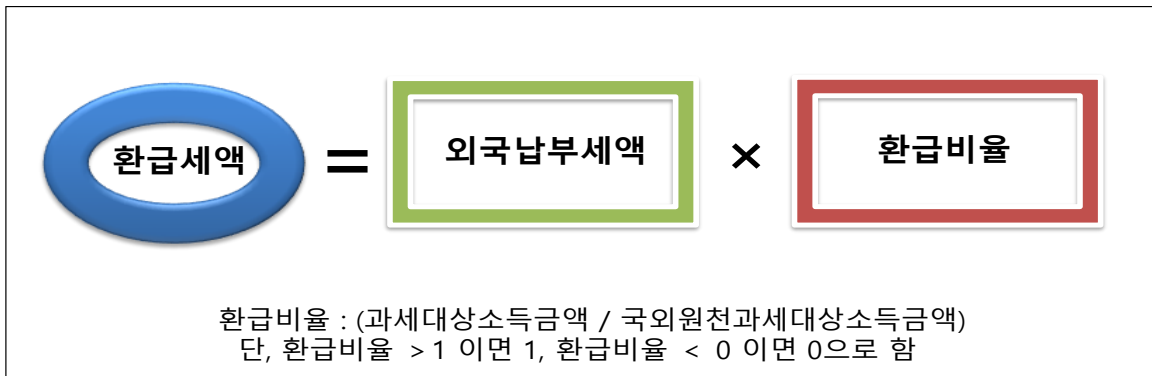
-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금액”이라 함) 한도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단,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50세 이상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로 함 -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종합과세 가능)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

	금수령시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세제

투자신탁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세액공제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 +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 +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 +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 퇴직급여를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 되며,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는 타 소득과 합산 후 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 됩니다.

- 다만, 연금 수령 시에도 사적연금액(퇴직연금+개인연금)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 해당사항 없음

나. 대차대조표

- 해당사항 없음

다. 손익계산서

-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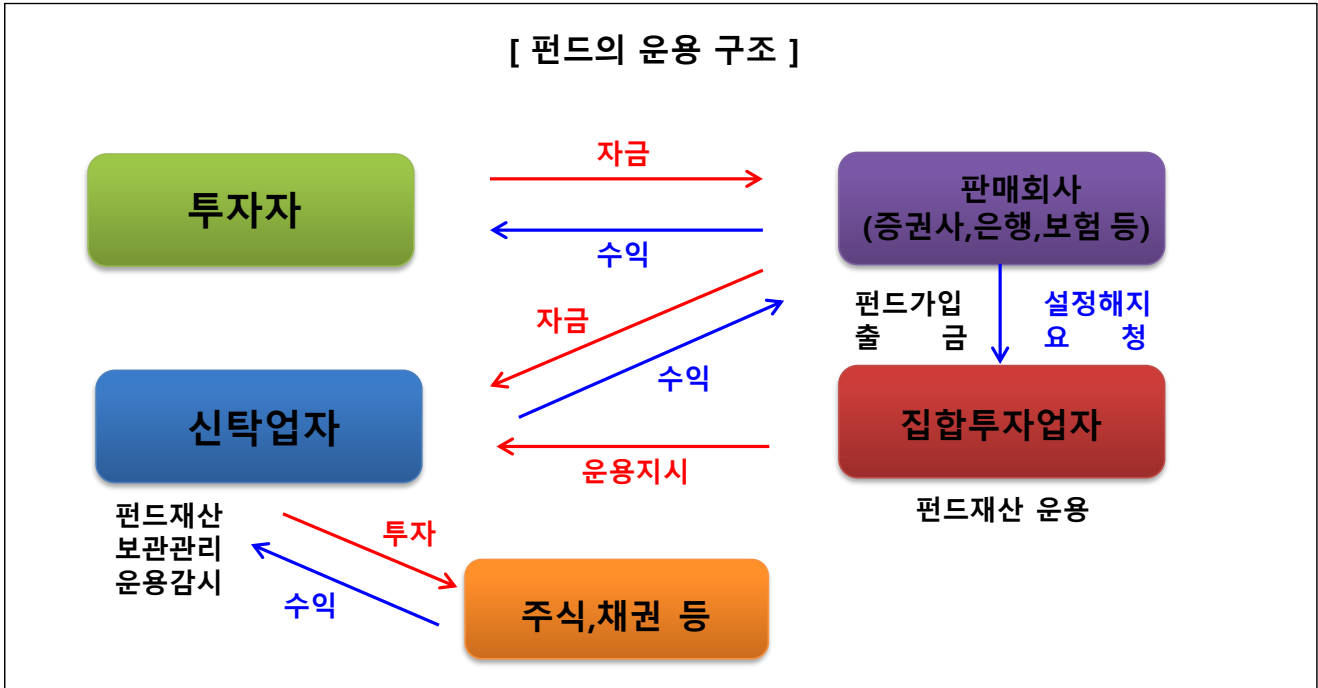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 사 명	하이자산운용주식회사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14층)	
연 락 처	02-707-4200	
홈페이지	www.hi-asset.com	
연 혁	2000년 3월	회사설립(델타투자자문)
	2008년 8월	자산운용사 전환
	2008년 8월	LS자산운용(주) 상호 변경
	2016년 10월	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DGB자산운용(주) 사명 변경
	2021년 8월	하이자산운용(주) 사명 변경
	2021년 10월	블랙록자산운용(주) 국내공모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자 본 금	191.7억(2022.02.15 기준)	
주주현황	(주)DGB금융지주 100%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2) 선관의무 등

-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행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책임

- ①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가 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신한아이타스(주)**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21.12.31	2020.12.31	계정과목	2021.1.1 ~ 2021.12.31	2020.1.1 ~ 2020.12.31
현금및예치금	14,072	18,036	영업수익	16,086	11,382
유가증권	21,872	17,433	영업비용	9,554	8,037
대출채권	-	-	영업이익	6,532	3,345

유형자산	885	1,289	영업외수익	16	19
기타자산	8,551	2,935	영업외비용	28	323
자산총계	45,380	39,694	경상이익	6,520	3,040
기타부채	5,419	2,785	법인세비용	1,468	647
부채총계	5,419	2,785	당기순이익	5,052	2,394
자본금	11,000	11,000			
자본잉여금	9,186	9,18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이익잉여금	19,776	16,723			
자본총계	39,962	36,909			

라. 운용자산 규모

[2022.06.10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부동산파 생	특별자산 및특별자 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 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1,242	33,573	3,011	0	4,464	8,246	0	2,202	964	119	21,043	74,862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 소	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연 락 처	1588-1770
홈페이지	www.hsbc.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②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③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④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⑤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수익금, 임대료 등의 수령
-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⑦ 증권상환금의 수입
-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 및 책임

(가) 의무

-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 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 결과

(나)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주)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6,22층
연 락 처	02-2168-0400
홈페이지	www.shinhanaita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의무 및 책임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울곡로 88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호 61
연락처	02-2251-1300	02-3215-1400	02-398-3900	02-721-5300
홈페이지	www.koreab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 평가 및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②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③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가) 수익자총회의 소집

-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연기수익자총회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③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② 투자신탁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③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증권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① 이 상품의 신탁계약서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②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③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④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⑤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③ 및 ④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상기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자보호 방안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탁계약서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이 최초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해지 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탁계약서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방법 이외에도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는 방법 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정리 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가) 영업보고서

-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법 제88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나)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②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시행령 제92조제2항에서 정하는 매매회전을
- ⑤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다)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②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와 같이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③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④ 법 제247조제5항 각호의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⑤-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⑦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⑨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hi-asset.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⑩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⑪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①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②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단위 :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분류	거래금액
-------	--------	--------	------

성명(상호)	관계			
-	-	-	-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단위 :백만원)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거래금액	거래사유
-	-	-	-	-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선정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거래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 하여야 한다. 회사는 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조사분석서비스에 한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여 조사분석서비스의 이용대가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는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된 편익에 비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중개회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 정보의 정확성 및 적시성 세미나 및 리서치 제공 발행 등 시황의 유용성 호가 경쟁력, 호가 대응 신속성 및 체결율 결제 프로세스의 정확성 상장지분증권 및 상장지분증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중개회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서치 제공 능력 매매 실행 능력 PT 및 세미나 기업 탐방 시장 정보 제공

주1) 각 항목별 평가항목 등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투자주체	하이자산운용(주)
투자목적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운용 책임성 제고 및 운용실적(Track Record 축적)

투자금액	2억원
투자시기	최초 설정일
투자기간	최초 설정일로부터 3년
투자금 회수계획	투자기간 경과 후 적정 운용규모 달성 여부 및 운용성과 등을 감안하여 2회이상 분할하여 회수 분할회수는 회차별 1개월 이상 시차를 두고 1회당 투자금의 50% 이내로 회수 단, 투자금이 펀드수탁고의 5%미만일 경우 일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공시	투자공간 종료 1개월 이전 '투자기간 종료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통지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내역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① 당연 해지사유 발생

② 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③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 및 해산하는 경우

④ 신규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 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 또는 소규모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⑤ 의무투자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산운용사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공모펀드 투자의무를 승계

주2)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금액은 상기의 의무투자금액 외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의무투자기간 이전에 시장상황에 따라 회수할 수 있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 용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은 공고일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그 공고일 전일의 펀드 수익증권 총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계산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말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의 신탁계약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자총회	법령 및 신탁계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 할 때 펀드의 모든 투자자들이 모여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신탁계약에 따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말합니다.
투자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즉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통상 연 %로 표시되며, 투자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펀드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신탁업자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라 하며,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통상 펀드라고 말하며, 대표적으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집합투자업자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펀드에 대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을 말합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이미 설정된 펀드에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펀드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중도환매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펀드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로서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다시 펀드재산에 편입됩니다.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다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